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1 선고 2023가단500336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김철, 이한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강혁

변론 종결2023. 5. 26.

판결 선고2023. 8.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지분에 관하여 2020. 9. 2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73,293,64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3,293,643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D은 2004. 12. 8. E 주식회사와, 2017. 2. 22. 주식회사 F과, 2014. 6. 14. 주식회사 G과 각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카드로 대출 등을 받았으나 대출채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원고에게, E 주식회사는 2020. 3. 23., 주식회사 F은 2020. 3. 9., 주식회사 G은 2021. 6. 22. 위 각 대출원금과 이자, 비용 등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회사들의 위임을 받아 2020. 4.경부터 2021. 7.경까지 사이에 D에게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각 통지가 도달되었다.

다. 2022. 12. 21.을 기준으로 원고가 양수한 각 채권의 합계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3,293,643원이다

2022-12-21	E	36,598,620원	0원	8,488,396원	11,773,573원	56,860,589원
2022-12-21	(주) F	4,025,722원	0원	820,980원	497,772원	5,344,474원
2022-12-21	G	7,851,849원	0원	2,773,405원	503,326원	11,128,580원
합계		48,476,191원	0원	12,082,781원	12,774,671원	73,293,643원

라. D의 어머니인 H은 2020. 9. 27.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I, 피고, J, K, D이 있었다. H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10. 피고 앞으로 2020. 9. 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1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망 H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였는데, 이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위 부동산은 이후 L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73,293,643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9,735,81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이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설사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이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가 그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서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라고 볼 것이다. 한편,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앞서 본 대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를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 바인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의 원고와 같이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상속포기 기간 중인 2020. 10. 21. 광주가정법원 2020느단3685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2020. 10. 26. 수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상속포기의 효과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였고, D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에 참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의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임상은

별지